

정보통신대학 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교) 정보통신대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대학 문화를 선도하며,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여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본교 정보통신대학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 정보통신대학 재학생으로 한다.(단, 대학원생은 제외)
- ② 휴학생은 휴학기간 중 5조 5항과 6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적용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근거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⑥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권리가 주어진다.
- ⑦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⑧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 ⑨ 본회는 헌법과 법률, 기타 적법한 법규에 위반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하며, 본회 활동으로 인하여 학교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학교 당국 관계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며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대 학생총회, 정보통신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 본회 집행국, 학과학생회로 구성된다.

제2장 정보통신대 학생총회

제7조 (지위)

정보통신대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최고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재적인원은 재학생으로 한다.)

제9조 (권한)

-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으며, 본회에 관련된 중요 안전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 ② 필요시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안전에 관련된 자 또는 관계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답변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③ 회원은 출석 요구가 있을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단, 탄핵소추는 학생총회 결의와 정보통신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의 1/3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⑤ 학생총회는 본회 집행국의 외부단체 가입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진다.(가입 및 활동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본회 집행국의 임기로 한다.)

제10조 (의장)

- ① 학생총회 의장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사고 시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단, 의장 탄핵안건 상정 등의 결위 시 본회의 정보통신대 운영위원 중 정보통신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 ③ 소집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 정보통신대 운영위원 중 정보통신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제11조 (소집)

- ① 학생총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학생총회는 정보통신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의 요구 혹은 회원 1/20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의장이 7일 후 14일 이내로 소집해야한다.
- ③ 본회 및 본교의 위기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공고 시일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④ 학생총회의 원활한 소집을 위해 총장 또는 각 교수의 허가를 받아 수업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개회 및 의결)

- ① 학생총회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①항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의결 권한은 정보통신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의결한다.)

제13조 (안건상정)

정보통신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통신대 학생총투표

제14조 (지위)

정보통신대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일하게 본회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최고의결권을 갖는다.

제15조 (구성)

총투표는 본회의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 (운영 및 의결)

- ① 총투표는 학생총회, 정보통신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로 발의하여 정보통신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총투표의 실시와 발의된 안건은 투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총투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투표기간의 연장 없이 무효 처리한다.)
- ④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4장 정보통신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7조 (지위)

정보통신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정학대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8조 (의장)

- ① 정학대회 의장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결위 시 또는 사고 시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단, 의장 탄핵안건 상정 등의 경우 본회의 정보통신대 운영위원 중 정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 ③ 소집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 정보통신대 운영위원 중 정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제19조 (구성)

- ① 정학대회는 원칙적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단, 동아리와 소학회의 경우는 직접선거 외 각 동아리와 소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인정한다.)
- ② 정학대회는 정보통신대 학생회장(부), 각 학과 학생회장(부), 인준된 정보통신대 동아리 회장, 인준된 각 학과 소학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 ③ 정보통신대 동아리 회장의 경우에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인준 받지 못한 동아리 회장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각 학과 소학회 회장의 경우에 각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인준 받지 못한 소학회 회장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구성원 중 궐위한 구성원 발생 시 재적인원에서 제한다. (단, 각 단위에서 대표로 인정된 자가 있을 경우 정학대회에서 자격을 심의, 의결한 후에 재적인원에 포함시킨다.)
- ⑥ 동아리 회장 및 소학회 회장의 인준서류는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에서 제작한 양식에 따른다.

제20조 (업무 및 권한)

- ①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
- ②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 ③ 총투표 발의
- ④ 본회 및 각 학과 학생회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
- ⑤ 정보통신대 및 각 학과 학생회비의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 ⑥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의
- ⑦ 각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의
- ⑧ 필요시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안전에 관련된 자나 관계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답변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회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⑨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회계, 행정) 결과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본교 당국징계위원회에 회부
- ⑩ 예비비 사용에 대한 표결
- ⑪ 기타 정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1조 (소집)

- ① 1학기 정기 정학대회는 학기 개시 60일 이내, 2학기 정기 정학대회는 학기 종료 30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해야한다.
- ② 의장은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 또는 요구가 있거나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정학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본회 및 정보통신대의 위기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정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공고 시일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2조 (안전 상정 및 공고)

①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는 정학대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학과 학생회에게 안전 수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는 정학대회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안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안전은 소집 공고 및 안전 공고 후부터 정학대회 개최 전까지 받고 정학대회 개최 자리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논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 (의결)

정학대회 업무 및 권한은 다음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①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적인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의결한다.)

제24조 (발언권 및 참관)

①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정학대회의 발언권을 가진다. (단, 정학대회 의장은 정학대회의 효과적 진행을 위하여 이들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정학대회의 참관권을 가진다.

③ 정학대회의 대의원석과 방청석은 정확히 구분이 되도록 배치한다.

제5장 정보통신대 감사위원회

제25조 (지위)

정보통신대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정학대회 산하 특별기구로, 중앙감사위원회의 부재 시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정보통신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보통신대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7조 (대상)

본회를 비롯한 자치기구 및 학과 학생회(이하 피 감사단체)는 감사대상이 된다.

제28조 (개회)

- ① 감사위원회는 정기 감사위원회와 임시 감사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감사위원회는 6월, 11월 중에 개회한다.
- ③ 정기 감사위원회는 개회 14일 전에 피감사단체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 ④ 피감사단체는 감사위원회가 개회를 공고한 후 7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별첨된 서식을 지켜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단, 정보통신대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9조 (업무 및 권한)

- ① 감사위원회는 피 감사단체의 회계에 대한 예, 결산 감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피 감사단체의 1학기 결산을 사업계획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받아 검토한 후 2학기 정기 정학대회 때 공고한다.
- ③ 감사위원장은 피 감사단체가 제출한 감사 자료와 감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감사에 응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 부정 발견 시 정학대회에 해당 책임자의 징계를 건의해야 한다. 이 때 징계수위를 판단하여 함께 건의할 수 있다.
- ⑤ 감사에 필요한 자료 공개와 감사와 관련된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자는 필히 참석하여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제6장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

제30조 (지위)

정보통신대 운영위원회(이하 정운위)는 본회 최고 운영기구로서 상시적 의사결정기구이다.

제31조 (구성)

- ① 정운위는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되고, 각 구성원을 정보통신대 운영위원(이하 정운위원)이라 칭한다.
- ② 학과 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하면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단, 본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한 학과는 기존 정운위의 승인에 따라 보궐선거 전까지 학과 학생회장직을 대리 임무 수행한다.)
- ③ 정보통신대 집행국의 집행국장, 사무국장은 정운위 위원 2/3이상의 요청 시 정운위에 출석, 발언권을 갖는다.
- ④ 인준된 각 학과 소학회 회장은 필요시 출석, 발언권을 갖는다.

제32조 (위원장)

- ① 정운위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이 겸임한다.
- ②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궐위 시 또는 사고 시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단,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안건 상정 등의 경우 정보통신대 운영위원 중 정운위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위원장 직을 수행한다.)

제33조 (업무 및 권한)

- ① 본회의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를 운영 및 책임진다.
- ② 본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정학대회에 상정한다.
- ③ 학생총회, 정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④ 회칙개정 및 정학대회 안건을 발의하여 정학대회에 상정한다.
- ⑤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및 각 학과 학생회장 선거일정을 결정하고 정보통신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⑥ 필요한 경우 정운위 산하 특별기구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⑦ 집행국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을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⑧ 기타 정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한다.
- ⑨ 정운위의 회의록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실에 소장하고 회원이 요청 시 공개한다.

제34조 (소집)

- ① 정운위는 정기 정운위와 임시 정운위로 나눈다.
- ② 정기 정운위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정운위에서 결정한다.
- ③ 임시 정운위는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의 요구나 정운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긴급히 소집한다.
- ④ 정운위는 재적 정운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35조 (의결)

- ① 정운위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의결한다.)

제7장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36조 (지위)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정학대회의 의장, 정운위의 위원장 및 집행국의장이 되며 정보통신대 부학생회장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궐위 또는 사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7조 (임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업무 및 권한)

- 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활동에 있어 본회를 대표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제반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가능하다.
- ③ 학생총회, 정학대회, 정운위 및 집행국을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 ④ 정보통신대 전체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 결산을 편성하여 정운위 심의를 거쳐 정학대회에 보고한다.
- ⑤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 ⑥ 정보통신대 집행국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⑦ 기타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9조 (권한대행)

- ① 권한대행은 제12장 63조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한다.)
- ② 권한대행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 일까지로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잔임 기간까지로 한다.)

제40조 (탄핵)

- ①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정학대회 구성원의 1/3 또는 정보통신대 회원 1/5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 ② 탄핵안은 학생총회나 총투표를 통해 의결하거나 정학대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학생총회 소집 혹은 총투표의 실시여부는 정학대회에서 결정하며 총투표의 관리는 정학대회에서 구성한 특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④ 탄핵안이 발의되면 의결 전까지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제41조 (신분보장)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8장 정보통신대 학생회 집행국

제42조 (지위)

본회 집행국(이하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3조 (구성)

집행국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국의 국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제44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총회, 정학대회, 정운위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 ② 본회의 사업계획, 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운위에 제출한다.
- ③ 집행국 국장은 정학대회 및 정운위의 요구 시 출석, 발언을 하여야 한다.
- ④ 집행국은 제반 활동의 집행을 위하여 그에 맞게 원활하게 구성된다.
- ⑤ 집행국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별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장 학과 학생회

제45조 (지위)

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의 최고 학생 대표기구이다.

제46조 (구성)

학과 학생회는 당해 각 학과 재학생 전체로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과 학생회 집행국을 둘 수 있다.

제47조 (회장)

- ① 학과 학생회장(부)은 11장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②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정운위원이 된다.
- ③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위원장이 된다.
- ④ 학과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결위 또는 사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⑤ 학과 학생회의 예·결산을 정운위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받을 의무가 있다.

제48조 (학과 학생회 회칙)

각 학과 학생회는 정보통신대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10장 재정

제49조 (재정)

- ① 재정은 총학생회비, 정보통신대학생회비와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② 총학생회비는 회원들이 납부한 총 금액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분율에 따라 집행국에 배정한다.
- ③ 정보통신대 학생회비는 신입회원들이 납부한 총 금액 중 정운위에서 결정한 지분율에 따라 집행국에 배정한다.

제5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학기 및 2학기로 구분되어 집행한다.

제51조 (예산)

예산은 회계연도 초 사업계획 항목별로 편성하여 정운위에서 심의, 조정한다.

제52조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말 혹은 임기 말 사업계획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운위에서 감사한 후,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중앙감사위원회 부재 시 감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53조 (감사)

- ①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의 감사는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단, 중앙감사위원회 부재 시 감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② 본회와 함께 각 학과 학생회의 예산 및 결산의 감사도 동시에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단, 중앙감사위원회 부재 시 감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11장 선거

제54조 (선거시기)

정보통신대 학생회장(부), 각 학과 학생회장(부)은 임기 연도 전년의 11월 중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정운위에서 정한다.

제55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 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56조 (피선거권)

- ① 선거권을 갖고 학업에 충실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열성을 갖고 통솔력이 있는 자
- ② 4개 학기 이상 8학기 이하 등록을 필한 자

가. 임기 중 초과 학기가 되어도 회장의 자격은 유지하며, 장학 등의 혜택은 포기함으로 한다.

나. 신생학과와 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8학기 이하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③ 누계평점 2.0 이상인 자

④ 무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자

제57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운위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체한다.

제58조 (선거방법)

선거는 선거 4원칙 (보통, 직접, 비밀, 평등)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59조 (임기)

정보통신대 학생회장(부), 각 학과 학생회장(부)의 임기는 각 자체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 (보궐선거)

① 정보통신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하거나 불신임 결의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 그날로부터 30일(방학은 제외)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잔임 기간이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한다. 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은 제7장 39조 권한대행 규정을 따른다.

③ 국가적 재난 및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비상 정학대회를 개최하여 의결에 따라 예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61조 (선거규약)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단,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이 경우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이다.)

제12장 회칙개정

제62조 (발의)

본회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의 발의

② 정학대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발의

③ 정운위의 발의

④ 회원 1/5인 이상의 발의

제63조 (의결)

회칙개정 발의 시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학대회에서 발의된 회칙개정안에 관한 표결을 23조 2항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64조 (공포)

- ① 개정된 회칙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장 정보통신대 공간관리위원회

제65조 (지위)

정보통신대 공간관리위원회(이하 정공관위)는 정보통신대의 최고 공간관리기구이다.

제66조 (구성)

- ① 정보통신대 부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학과 학생회에서는 해당 학생회의 회장이 위원이 된다. (단, 회장의 부재 및 궐위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
- ③ 위 단위의 회원이 부재 및 궐위 시 해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신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부재 및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제67조 (업무 및 권한)

정공관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 회칙’ 준수
- ② 정보통신대 소학회 간담회 소집 요구 및 개최
- ③ 정보통신대 동아리, 소학회 활동 및 회장단 명단 관리
- ④ 중앙공간관리위원회로부터 배분된 공간 배치 권한
- ⑤ 공간 관련 사항 파악 및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대 소학회 회장단 및 회원 소집 요구 권한
- ⑥ 정보통신대에 배정된 공간 관련 사항의 의결권
- ⑦ 정보통신대에 배정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현장 실사 권한

제68조 (소집)

- ① 정공관위 회의는 정기 정공관위 회의와 임시 정공관위 회의로 구분된다.
- ② 정기 정공관위 회의를 매주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정공관위에서 결정한다.
- ③ 임시 정공관위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 ④ 정공관위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⑤ 정공관위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실에 소장하며, 본회 회원의 요청 시 공개한다. (단, 회의록 관리는 정공관위 위원장이 한다.)

제69조 (의결)

- ① 정공관위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 의결한다.

제70조 (정보통신대 소학회 간담회)

정보통신대 소학회 간담회(이하 소학회 간담회)는 원활한 소학회 공간 배치와 소학회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다.

- ① 소학회 간담회 의장은 정공관위 위원장이 맡는다.
- ② 정보통신대 소학회 간담회의 재적인원은 공관위의 모든 회원과 정보통신대 소학회 회장들로 구성되며, 해당 소학회 회장의 궐위 또는 부재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
- ③ 정보통신대 소학회 간담회는 정기 소학회 간담회와 임시 소학회 간담회로 구분된다.
- ④ 정기 소학회 간담회는 1학기 개강 최소 한 달 전에 개최하며, 소집 요구는 개최 7일 전에 공고한다.
- ⑤ 임시 소학회 간담회는 정공관위 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 ⑥ 소학회 간담회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⑦ 소학회 간담회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실에 소장하며, 참석 인원이 요청 시 공개한다. (단, 회의록 관리는 정공관위 위원장이 한다.)
- ⑧ 소학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차후 정공관위 회의에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참석 인원에게 공지한다.

제71조 (공간 배치)

중앙공간관리위원회로부터 배분된 공간을 정보통신대 학생회, 학과 학생회, 정보통신대 소학회에게 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정공관위가 공간 배치 업무 및 권한을 맡는다.
- ②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 회칙’ 과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른다.
- ③ 정보통신대 학생회, 학과 학생회의 공간 배치를 보장하며, 공간 위치는 바뀔 수 있다.
- ④ 정보통신대 소학회가 제출한 공간 배치 자료를 심사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제72조(공간 배치 자료 심사)

정보통신대 소학회가 제출한 공간 배치 자료를 정공관위에서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공고)

- 1. 공간 배치 자료 제출 공고를 해당 연도 2월 첫째 주 이내에 실시하며 아주대학교 자유

게시판에 기재한다. (단, 기재 후 정보통신대 소학회 회장단에 공지한다.)

② (심사)

1. 정보통신대 소학회에서 제출한 공간 배치 자료는 정공관위와 정보통신대 교학팀에서 심사하며, 반영 비율은 정공관위에서 결정한다. (단, 정공관위 위원장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심사 진행 및 관리만 한다.)

2. 심사 기준은 전년도 심사 기준을 참고하되, 정공관위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단, 소학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

3. 공간 배치 자료의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정보통신대 소학회 회장단 및 회원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간 배치 자료 심사표에 심사 기준에 따른 점수, 해당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포함해야 하며, 재배치 공고 후 공간 배치 자료를 제출한 모든 소학회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 (이의제기)

1. 이의제기는 재배치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정공관위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73조 (징계)

① 모든 징계 사항은 공간관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정공관위 회의를 통해 공간관리 징계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상정 후 72 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대학생회장이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4. 본 회칙의 전 항은 차기 개정 회칙 통과 시까지 시행되고 그 날로 삭제된다.
5. 본 회칙은 97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발행)

본 회칙은 정보통신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2006년 10월 18일 공포하며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학대회의 결정을 따른다. (단, 선거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르며 선관위의 결정을 따른다.)

부칙

1. (발행) 본 회칙은 정보통신대 학장에게 전달하고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 본 회칙은 2012년 01월 25일 공포한다.
3. (변경) 회칙변경에 따라 각 조를 수정한다.

부칙

제1조 (발행)

본 회칙은 정보통신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2013년 1월 19일 공포하며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변경)

학과제로 개편됨에 따라 학부에 관련된 회칙을 학과에 관련된 회칙으로 수정한다.

제4조 (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학대회의 결정을 따른다. (단, 선거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르며 선관위의 결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 (발행)

본 회칙은 정보통신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2015년 10월 28일 공포하며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변경)

학과제로 개편됨에 따라 학부에 관련된 회칙을 학과에 관련된 회칙으로 수정한다.

제4조 (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학대회의 결정을 따른다. (단, 선거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르며 선관위의 결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 (발행)

본 회칙은 정보통신대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2020년 11월 13일 공포하며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학대회의 결정을 따른다. (단, 선거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르며 선관위의 결정을 따른다.)